의안번호	제 21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9 월 일 (제294회)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0년 8월 25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

제출연월일 : 2010년 8월 25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지원과 지역내 중소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제도를 마련하고

○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범위를 조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6대 국책기관 소속직원의 거주지 이전 유도 및 정착지원을 위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 (안 제28조의2)

- 감면대상 : 충청북도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
- 감면물건 :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보조금신청일 기준 이전 24개월이내 신규투자 취득분 포함)
- 감면기간 : 고용보조금 최초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 지급받는 기간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감면대상 범위 확대 (안 제30조의3)

- 현행 :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이외의 개별이전이 승인된 공공기관. 다만,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개정 : 혁신도시와 혁신도시이외의 개별이전이 승인된 공공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의 소속직원도 지방세 감면혜택 부여

3. 의안전문 : 붙 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충청북도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신청일 기준 24개월이전에 이루어진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부동산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30조의3 제1항 중 “이전공공기관”을 “이전공공기관 및 그 외 수도권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2〈신설〉	제28조의2(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충청북도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신청일 기준 24개월이전에 이루어진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부동산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30조의3(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감면) ①「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제30조의3(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감면) ①「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및 그 외 수도권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제10호의 기관을 말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와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전략산업과 해당 광역경제권의 지역선도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고용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조금 지원기준 고시

충청북도 고시 제2010 - 5호

2010년도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세부지원기준 고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5호(2009.12.31)에 의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 1. 15

충청북도지사

1.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전역)을 제외한 타 비수도권 지역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기간도 포함

□ **지원업종** :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제조업 또는 제조업지원서비스업(별표)을 영위하는 기업

2. 지원요건 : 신규 투자를 통해(완료 후) 신규고용을 창출

□ **기업규모별 최저 투자금액 및 최소 신규고용인원**

구 분	최소 신규투자금액	최소 신규고용인원
소기업 (1~49인)	0.5억원 이상	1명 이상
중기업 (50~299인)	3억원 이상	1명 이상

○ 기업규모판단 : 투자완료일 직전 3월 월평균 인원수

○ 신청가능인원 : 보조금 신청일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 - 투자완료일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중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동안 계속하여 고용된 인원수로 산정
(단, 신규 상시고용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

* 신규상시고용인의 자격 : **고용보험가입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기간제근로자 중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 단, 아래의 "취약계층"대상자를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규투자금액은 취약계층 채용인원 1인당 2백만원씩 공제한다.

1.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 고령자
2.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 2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 **투자의 범위**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투자 **(단, 거주용 건물의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는 제외)**

1.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
2. 건설투자 중 토목구축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시설) 설치비
3. 설비투자 중 운수장비 구입비
4.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용기자재, S/W 구입비)
5.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매입비

□ **신규투자 인정기간** : **24개월, 즉 보조금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투자** 인정

○ 투자 완료시점은 기업의 투자유형에 맞게 자율적으로 증빙

- 비주거용건물에 대한 건축비, 토목구축물 설치비 : 건축물사용승인서(건축법 제22조 제2항)
  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산집법 제15조) 등
- 기계, 장비, 운수장비 등 구입비 : 기계·장치의 구매 또는 설치를 완료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세금계산서, 지급증명 통장 등)

□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의 기준 :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기준**

○ 다만 기존사업장외에 신규투자를 통하여 사업장을 새로이 설립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모든 사업장이 지원기준을 충족(비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하고, 동일한 사업영위,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의 증빙이 가능 등)하고 대표자, 법인명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용보조금 지원기준상의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으로 인정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신청인원 1인당 50만원이내, 12개월 이내 지원**
(단, 지원예산 사정상 실제 지원기간이 축소·조정 될 수 있음)

< '10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기업유형		지 원 금 액
중소 기업	소기업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12월 이내
	중기업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12월 이내

*** 예산 소진시 지원종료**

□ **지원한도** : 동일 회계년도내 1개 기업 당 **100명 이내**

○ 보조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1년 이내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매월 10일까지
- 단,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각 시 · 군청

5. 신청시 구비서류

□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양식 1~4)
-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내역서, 성실이행각서, 중복여부신청서

□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등(필요시 생산품카탈로그 등)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중 택1** (신청일 직전 3월분 및 투자완료일 직전 3월분)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신규고용인원 입사한 달부터), (www.ei.go.kr에서 출력가능)

○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신규고용인원 입사한 달부터)

○ 세금계산서, 건축물사용승인서 등 (신규 투자 증빙)

○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1부 (고용보조금 입금계좌)

○ 취약계층 근로자가 취약계층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보조금 지급 및 의무 고용이행상황 등

□ 보조금 지급 방법

○ 신청시 받은 증빙자료를 기초로 3개월분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3개월 단위로 사후지급

- 지원받는 기업은 매 3개월마다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각 시 · 군청에 제출 하여야 함

- 고용유지의무를 위반한 월부터 위반 인원분의 향후지급예정액은 지급불가

□ 보조금 지원기업 의무 고용이행상황(모두 이행 필요)

○ 필요 상시고용인원수(**투자완료일 직전 3월 월평균인원수 + 보조금 지원대상 인원수)를 유지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신규고용인 유지**

※ 상기 의무고용이행상황위반시 위반월부터의 위반인원수에 대한 향후 지원액 지급 중지 다만, 필요 상시고용인원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신규고용인 퇴사시, 타 신규고용인으로 대체 가능(연속고용일 경우이며, 대체시 필히 시군청에 승인을 요함)

7. 기 타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환수 관련법에 의거 보조금을 환수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미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경과 조치

○ **지경부 지원기준 시행일('10.1.1)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 이후에 이루어진 신규고용 및 지방기업의 보조금 신청일 직전 24월이내에 이루어진 신규투자의 경우에 적용한다.**

○ **전년도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보조금 미 지원분에 대하여는 '10 지원기준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다만 '09.1월~9월 신규고용에 한함)**

□ 기타 본 고시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관련고시의 해석에 따름

9. 문 의 처

○ 충청북도청 기업지원과 (220-3313)

〈각 시군 접수부서〉

○ 청주시청 기업지원과	(200-2312)	○ 충주시청 경제과	(850-6024)
○ 제천시청 한방경제과	(641-5031)	○ 청원군청 경제과	(251-3202)
○ 보은군청 경제과	(540-3243)	○ 옥천군청 경제개발과	(730-3193)
○ 영동군청 투자유치과	(740-3744)	○ 증평군청 경제과	(835-4024)
○ 진천군청 경제과	(539-3353)	○ 괴산군청 경제과	(830-3353)
○ 음성군청 공업경제과	(871-3472)	○ 단양군청 지역경제과	(420-3693)

□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이전공공기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제외한다.
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